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치결과 보고 및 거짓 서류등 제출 처벌〉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06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서류등 제출 거부 조치결과 보고	3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등 제출 처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 영 · 위성곤 · 박성준 · 임호선 · 전재수 · 박 정
이훈기 · 김영진 · 강훈식 · 진성준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1.

3. 회 부 일 : 2024. 12. 12.

※ 의안번호 : 64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서류등 제출 거부 조치결과 보고

개정안은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을 요구한 경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② 관계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생략)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과(요구받은 조치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4조¹⁾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1)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나, 서류등의 제출 대상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²⁾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제4조의²³⁾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 예외 사유인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을 요구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 의무나 조치결과 보고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의 본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해명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주무부장관이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⁴⁾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조치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
- 4) 현행 국회관계법상 국회의 시정 요구 또는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정부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는 ①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 및 정부 등의 처리 결과 보고, ②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검토 결과 송부 및 정부 등의 처리 결과 제출, ③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 요구 및 정부 등의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음.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조치결과의 실효적 관리 측면에서 서류등의 제출 요구,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 요구 및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한 주체가 ① 본회의인 경우에는 ‘본회의’에 출석·해명하거나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② 위원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하거나 ‘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조치결과 보고 대상에 ‘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⁵⁾

둘째,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서류 제출등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의결로 요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검토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무부장관에게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산 시정요구 사항과 국정감사·국정조사 시정요구 사항과 동일하게 검토 과정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조치⁶⁾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5) 출석·해명의 경우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요구하면 본회의에 출석·해명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위원회에 출석·해명함.

6) 결산 시정요구 사항과 국정감사·국정조사 시정요구 사항은 검토 과정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7) 그 밖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포함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생 략) <신 설>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u>조치요구</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과(요구받은 조치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u>조치요구 등</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등 제출 처벌

개정안은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u>서류</u> 제출 요구를 <u>거절한</u>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 ----- <u>서류등의</u> ----- - <u>거부한</u> 자, 거짓으로 보고 또는 <u>서류등을 제출한</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⁸⁾는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그 요구를 ‘거절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8)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의 법정형과 최근 재의 결과 부결⁹⁾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 벌칙규정의 법정형¹⁰⁾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3]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u>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u>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10)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음.

[표-4] 재의 결과 부결된 개정안상 벌칙규정¹¹⁾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u>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u> ,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문 의 처

02)6788-5017

11) 개정안에서 신설된 벌칙규정만 표시함. 참고로, 정부는 재의요구서에서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허위 서류등 제출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과중하여 과잉형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